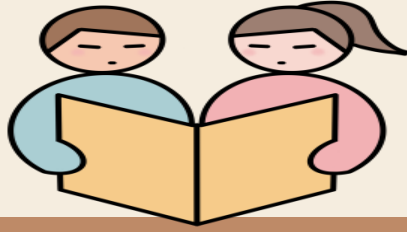


# 부여군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인권헌장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2.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화,수화통역사,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5.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문화,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9.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등에 있어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 침해시 처리절차 안내

## 1. 부여군 장애인 복지관 고충처리 안내



홈페이지 게시판,  
건의함 신청 및 접수



고충처리 위원회  
개최



답변 공지  
(14일 이내)

## 2. 국가 인권위원회 처리 절차 안내



국번없이 1331,  
우편(진정함 이용),  
방문 등  
신청 및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



행정심판(불복시)

